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교통이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업무를 교통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교통약자 관련 업무 위탁기관 신설(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신설)

교통이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업무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업무를 교통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「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통이용 정보체제의 구축 및 운영
2. 법 제25조에 따른 교통약자 실태조사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3(권한의 위임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1조의3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 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·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중 국 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1.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통 이용 정보체제의 구축 및 운 영 2. 법 제25조에 따른 교통약자 실태조사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05